

DDA 2008년 4월 농업협상*

신 유 선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접근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민감한데, 특히 이 중에서도 관세상한, 특별품목(SP), 민감품목이 주요 쟁점이다.

DDA 농업협상¹⁾은 3월 31일 주간부터 민감품목 등의 핵심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4월 하순경 의장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주요국 심층회의²⁾에서는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식, 관세상한 등 전체 문제 중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5월 중·하순경 농산물과 비농산물 부문³⁾을 동시에 협의하는 고위급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각료회의는 빠르면 5월 하순이나 6월 초, 늦으면 7월경에 개최될 전망이다.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이 채택될 경우에는 각국은 이에 기초하여 약 6개월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DDA 농업협상은 시장접근분야, 국내보조분야, 수출경쟁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접근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민감한데, 특히 이 중에서도 농업협상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세상한(Tariff Capping)⁵⁾, 둘째, 특별품목(Special Product)⁶⁾, 셋째,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⁷⁾이 바로 그것이다.

1. 관세상한(Tariff Capping)

세부원칙⁸⁾ 수정안은 관세 감축 후 100% 이상인 관세가 4% 이상인 경우 TRQ 중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량 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민감품목에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우리나라 등은 관세상한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의장안 Para 76의 관세상한 대안도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10국가⁹⁾들은 관세상한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 의장안의 관세상한 대안(para 76)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는 비민감품목과 민감품목을 구분하여 관세상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비민감품목의 경우 단순한 관세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관세상한 대안인 의장안 Para 76의 마지막 문장 수치를 변경하여 관세 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인 세번이 1%를 넘을 경우 추가 증량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10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 적용 대신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 및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일본, 우리나라 등은 세부원칙 수정안이 제시한 관세상한 기준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의장안 Para 76의 관세상한 대안도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특별품목(Special Product)

G33¹⁰⁾의 핵심문제인 특별품목(SP)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¹¹⁾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미국의 특별품목 제안이 G33의 핵심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3.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최근 민감품목 TRQ의 기초가 되는 소비량 산출방식에 대해 주요 6개국은 절충안을 도출(4.3)하여, 이에 기초하여 Room E¹²⁾ 협의에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품목별 소비량 계산결과를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 이전에 세부원칙 논의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2월 9일 세부원칙 수정안에 따르면 세부원칙 채택 전에 민감품목 소비량 자료를 제출하여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하고, 자료가 제출된 품목만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들은 민감품목 소비량 자료 제출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한창 준비 중이다.

Room E회의에서 의장은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경우 TRQ 신규설정을 허용해야 하며, 소비량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하고, TRQ를 증량하는 대신 이행기간 조정 등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세부원칙 수정안에 따르면 세부원칙 채택 전에 민감품목 소비량 자료를 제출하여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하고, 자료가 제출된 품목만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번별 소비량 계산방식[Annex C]

품목전체 소비량을 2단계에 걸쳐 배분하게 되는데, 먼저 HS 6단위별로 배분(Step1)한 후, 다시 이를 HS 10단위로 배분(Step2)해야 한다. 이는 국별 수입비중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입비중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수입이 많이 되는 세번은 소비량도 많다고 전제하여 세번별 수입비중에 따라 품목전체 소비량을 각 세번에 배분한다. 우선 소비량을 세번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배분기준이 되는 세번별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번별 통계로는 수출입통계를 이용한다.

품목전체 소비량을 2단계에 걸쳐 배분하게 되는데, 먼저 HS 6단위별로 배분(Step1)한 후, 다시 이를 HS 10단위로 배분(Step2)해야 한다. 이 때, 6단위로 배분할 때에는 전세계 수입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10단위로 배분시에는 각 국별 수입비중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품목 전체 소비량을 HS 10단위 세번에 바로 배분하지 않고 2단계에 걸쳐 HS 6단위로 배분 후 HS 10단위 세번에 배분한 것은, 국별 수입비중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입비중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표 1 세번별 소비량 계산 방식

구 분	Step 1	Step 2
목적	◦품목 전체 소비량을 HS 6단위별로 배분	◦HS 6단위별로 배분된 소비량을 HS 10단위별로 배분
기본 방식	◦전세계 수입액비중에 따라 배분 - 품목전체 전세계 수입액대비 해당 6단위 전세계 수입액의 비중에 따라 배분	◦국별 수입액비중에 따라 배분 - 6단위 국별 수입액대비 해당 10단위 국별 수입액의 비중에 따라 배분
구체적 산출공식	◦6단위 소비량 = 전체 소비량 × (6단위 전세계 수입액 / 품목전체 전세계 수입액)	◦10단위 소비량 = 6단위 소비량 × (국별 해당 10단위 수입액 / 국별 해당 6단위 수입액)

소비량이 적게 산출될수록 TRQ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의견 대립이 있다. 소비량 데이터 산출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두된 쟁점으로는 소비량의 포함 범위, 기준년도, 소비량 데이터 산출방식이 있다.

소비량 데이터 문제(Headline figure)

세번별 소비량을 계산하기에 앞서 품목 전체 소비량의 산출도 필요하다. 이때, 소비량이 적게 산출될수록 TRQ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국들은 소비량 데이터를 작게 산출하고자 하고 수출국들은 크게 산출하고자 함에 따라 소비량 데이터 산출방식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다.

소비량 데이터 산출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두된 쟁점으로는 소비량의 포함 범위, 기준년도, 데이터 산출방식이 있다.

첫째, 소비량 포함 범위 : 품목별 소비량 데이터에는 식용소비량(human consumption),

가공용(industrial use) 및 사료용(animal feed) 소비량도 포함된다.

둘째, 기준년도 : 세부원칙 수정안에서와 같이 2003~05년 평균을 사용한다.

셋째, 소비량 데이터 산출방식은 아래의 표를 이용한다.

표 2 소비량 산출 방식

품목	연도	생산량 (a)	수입량		총공급량 (d=a+b-c)	수출량 (e)	재고변화 (f)	국내소비량 (g=d-e-f)
			전체(b)	의무再수출량(c)				
품목 X	2003	564,000	15,000	0	579,000	10,300	-27,000	595,700
	2004	565,000	2,000	0	567,000	8,300	-25,000	583,700
	2005	611,000	19,000	0	630,000	7,700	7,000	615,300
	'03-'05년 평균 소비량							598,233
	+ 소비량조정(net trade)							+ 7,736
	조정된 최종 소비량							605,970

소비량 데이터 산출방식은 기본적으로 <표 2>의 balance sheet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비량은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한 값에 수출량과 재고량을 뺀 값을 활용한다. 이때 차이 세 번에 해당하는 순수입량 만큼 소비량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net trade라고 한다.

net trade란 <표 3>에서처럼 소비량통계 산출시 수입량 및 수출량에 포함한 세 번과 정의되는 품목별 포함 세 번 범위와 차이나는 세 번에 해당하는 순수입량(=수입량-수출량)만큼 소비량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 3 소비량 조정(net trade) 산출방식

품목 세번	소비량 산출시 세 번 범위	Member Action (수입량-수출량 부호)	소비량 조정
040510	040510		
040520		+	7,736
040590	040590		
소비량 조정분			+ 7,736

가령 <표 2>에서 X품목의 평균 소비량은 598,233톤이고, X품목의 전체 세 번은 <표 3>에서처럼 040510, 040520, 040590 이렇게 세 개이다. 이때 X품목의 소비량은 040510과 040590의 세 번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040520의 소비량을 더해줘야 한다. 040520의 소비량을 더해주는 것을 net trade라고 하며, 이는 040520 세 번의 수입

소비량은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한 값에 수출량과 재고량을 뺀 값을 활용한다. 이때 차이 세 번에 해당하는 순수입량 만큼 소비량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net trade라고 한다.

소비량통계를 Step1 및 Step2를 거쳐 세 번별로 배분할 때, 각 품목별로 관련된 세번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때, 원료농산물 세번은 관련 품목 세번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나 가공품 세번을 관련 품목 세번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다.

량에서 수출량을 뺀 값이 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량은 X품목 평균 소비량 598,233톤(040510, 040590)에 net trade(040520) 7,736톤을 더한 값이 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된 소비량 통계를 Step1 및 Step2를 거쳐 세번별로 배분할 때, 각 품목별로 관련된 세번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때, 원료농산물(primary products) 세번은 관련 품목 세번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나 가공품(processed products) 세번을 관련 품목 세번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다.

가공품 세번을 포함하여 소비량을 배분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원료농산물 세번에 배분되는 소비량이 작아지게 되므로 수입국들은 가공품 세번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수출국들은 이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제출 시기

아르헨티나 등은 소비량 데이터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나라, 태국, 필리핀, 대만 등은 데이터 제출시기에 신축성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감품목 국내소비량 계산공식 문제와 관련하여 6개국간¹³⁾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관련 통계자료 작성 일정에 대한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품목목록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기회 및 기존 품목의 세번 범위 변경 기회 등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특별품목(SP) 및 SSM에 대한 기본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4. 기타 논의 사항

기타 논의 사항으로 경사관세, 관세단순화, 열대작물과 특혜장식 목록간의 중복 문제, 그린박스 관련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경사관세¹⁴⁾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 범위 확대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우 문제는 차상위 구간의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관세단순화¹⁵⁾는 다수 개도국이 100% 종가세 전환을 주장한 반면 EC가 총 세번의 5%에 해당되는 복합세 유지를 주장하였다. 관세단순화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명확히 대비되어 실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열대작물¹⁶⁾ 및 특혜장식 목록과 관련하여 이들 목록의 중복문제로 인해 열대작물 그룹 및 ACP 그룹간 심각한 입장차가 표출되었다.

그린박스(Green Box)¹⁷⁾의 생산비연계 직접지불의 경우 G20¹⁸⁾가 보조액이 증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여 EC, 미국, 일본 및 노르웨이의 입장과 대립되었다. 의장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자의 생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보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5. 양우 전망

최근 DDA 농업협상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3월 말부터 민감품목 등의 핵심문제가 논의되었고, 5월 중·하순경에 농산물과 비농산물 부문¹⁹⁾간 고위급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²⁰⁾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어 5월 하순이나 6월 초 혹은 매우 늦어질 경우 7월에 각료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4월말부터 5월초까지는 농산물과 비농산물 부문을 동시에 협의하는 고위급 동시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5월 중하순경 각료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6. 양우 일정

- 3월 말~4월: 세부원칙(Modalities) 합의를 목표로 내각회의
- 5월 중·하순: 농산물과 비농산물부문간 고위급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
- 5월 말~6월: 각료회의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 2008. 2

- 1)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 2)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여 개국이 참가한다.
- 3)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 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 협상'이라고 한다. 남아협상은 선진국과 G-20, G-33, NAMA11, 최빈 개도국(LDC), African Group, 소규모취약국가(SVEs), Cotton4 countries 대결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 4) DDA협상은 최종적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협상을 거친 후 분야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문 간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 5)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이다.
- 6)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 7)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8)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9)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 10)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 11)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2)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 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 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 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쿠바(G-33, 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 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 G-20), 인도네시아(G-33, G-20, 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 SVE, ACP), 일본(G-10), 케냐(G-33, 아프리카, ACP), 한국(G-33, G-10), 레소토(LDC, 아프리카, ACP), 모리셔스(G-33, ACP, 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 G-20, G-33), 파나마(G-33, 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 G-20, 열대작물), 필리핀(G-33, G-20, 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 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 LDC, 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 G-20), 미국, 베네수엘라(G-33, 열대작물, G-20).
 - 13)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
 - 14)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15)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종가상당치(Ad-valorem Equivalent)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X%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수입물량에 일정금액의 관세(예컨대 100원/kg)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를 높고 낮은 구간대로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세 등에 대한 종가상당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 번(tariff line)중에서 76개 세 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mixed duty)이다.
 - 16)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 17)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의 보조금은 감축의무가 없으며, 이를 허용보조라고 한다.
 - 18) G-20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을 말한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 19)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 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 협상'이라고 한다. 나마협상은 선진국과 G-20, G-33, NAMA11, 최빈 개도국(LDC), African Group, 소규모취약국가(SVEs), Cotton4 countries 대결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 20) DDA협상은 최종적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협상을 거친 후 분야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문 간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